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24 선고 2018가단5783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9. K

10. L

변론 종결 2019. 8. 13

판결 선고 2019. 9. 24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, L은 연대하여 229,025,594원 및 그 중 8,378,021원에 대하여,

나.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피고 C, H, I, J, K, L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

1) 피고 D는 76,341,864원 및 그 중 2,792,673원에 대하여,

2) 피고 E, F, G은 각 50,894,576원 및 그 중 1,861,782원에 대하여,

다.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피고 C, D, E, F, G, L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

1) 피고 H는 76,341,864원 및 그 중 2,792,673원에 대하여,

2) 피고 I, J, 드는 각 50,894,576원 및 그 중 1,861,782원에 대하여 각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
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L은 별지 표 '피보험자'란 기재 각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(이하 '이사건
공급계약'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 L은 원고와 사이에, 이 사건 공급계약상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표 기재와
같은 내용의 지급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고, M, N, 피고 C는
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(이하
'이 사건 구상금'이라 한다)를 연대보증(이하 '이 사건 연대보증'이라 한다)하였다.

다. 피보험자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 하였고,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는 피고 L, C 및 M, N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9933호로 이 사 건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08. 11. 28. "피고 L, C 및 M, N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,904,142원 및 그 중 83,186,322원에 대하여 2001. 5. 30.부터 2008. 10. 7.까지는 연 2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"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마. 1) M는 2016. 12. 16. 사망하였는데, 망 M의 처인 피고 D, 자녀들인 피고 E, F, G은 상속한정승인 신고(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느단100014)를 하였고, 위 법원은 2017. 4. 5.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.

2) N은 2018. 10. 18. 사망하였는데, 망 N의 처인 피고 H, 자녀들인 피고 I, J, 또는 상속한정승인 신고(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142)를 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1. 8.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.

바. 2015. 9. 30.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구상금의 원금은 8,378,021원, 지연손 해금은 220,647,573원이다.

사. 원고는 2018. 10. 12. 위 라.

항의 판결금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

○ 피고 C, L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)

○ 피고 D, E, F, G, H, I, J, K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에게, ① 피고 C, L은 연대하여 229,025,594원(= 원금 8,378,021원 + 지연손해금 220,647,573원) 및 그 중 8,378,021원에 대하여, ②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

내에서, 피고 C, H, I, J, K, L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중 피고 D는 76,341,864원(= 원리금 229,025,594원 X 상속분 3/9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 및 그 중 2,792,673원(= 원금 8,378,021원 x 상속분 3/9)에 대하여, 피고 E, F, G는 각 50,894,576원(= 원리금 229,025,594원 x 상속분 2/9) 및 그 중 1,861,782원(= 원금 8,378,021원 x 상속분 2/9)에 대하여, ③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피고 C, D, E, F, G, L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D는 76,341,864원(= 원리금 229,025,594원 x 상속분 3/9) 및 그 중 2,792,673원(= 원금 8,378,021원 x 상속분 3/9)에 대하여, 피고 I, J, K는 각 50,894,576원(= 원리금 229,025,594원 x 상속분 2/9) 및 그 중 1,861,782원(= 원금 8,378,021원 X 상속분 2/9)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준구

별지